인쇄하기

무방문, 무서류 간편 대출 가능

영업점

전자채권담보대출



가입대상 **개인사업자&법인**



^{죄상} **1년이내 (최장 5년)**

상품안내

대출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

화 및 용역을 판매하고 전자채권을 수취한 판매기업

대출금액

- 운전자금한도산정금액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 용도 등을 감안 하여 결정
- * 최저대출금액 제한은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1년 이내 한도(기한연장시 당초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1년 이내 한도(기한연장시 당초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

금리 및 이율

적용이율 결정방법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금리 예시(운전자금 3개월 변동금리, 중소법인신용등급 BBB등급, 신용보증80%, 2024.11.05기준)
- ㅇ 기준금리 : 연 3.43%
- 가산금리 : 연 2.43%p~연 3.85%p
- ㅇ 적용금리 : 최저 연 5.86%~ 최고 연 7.28%
- *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변동금리 : 「매 주기별(3개월, 6개월, 12개월)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 고정금리 : 고객이 선택한 대출기간에 동일한 금리 적용
- ☞ 기준금리 :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o 3개월 단위: CD91일물 유통수익률
- 6개월 단위 이상 :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 가산금리 : 고객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이자계산 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나누어 계산

이자 부과시기

- 대출이자는 대출약정시 정한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부과됩니다.[예시) 매월 (00)일에 지급합니다]

원리금상환 방법

- 일시상환방식
- * 이자선취방식: 원금은 기일에 회수하고, 이자는 일괄선취

원금 또는 이자 상환관련제한

- 휴일에 기업인터넷뱅킹 및 당행 ATM을 이용하여 원금 및 이자상환 가능. 단, 보증서 담보 여신은 보증금액 해지통지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휴일 상환 불가

이용안내

담보제공여부

- 한도약정시 필요한 경우 담보(보증서포함) 제공 가능

유의사항 및 기타

수수료 등 부대비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 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 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및 한도약정 수수료(한도미사용 수수료 포함) 없음
- 전자채권 발행 및 보관수수료
- ㅇ 채권발행수수료(구매기업) : 건당 500원 □ 채권발행시점 납부
- ㅇ 채권보관(수취)수수료(판매기업) : 건당500원 □ 결제대금입금시점 납부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 + 연3%p]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2.0%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만기 도래시 기한연장 방법

- 한도계좌의 만기 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한도내 건별 만기는 연장 불가)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고객에게 발생할 수있는 불이익

- 해당사항없음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개시일 : 2024.11.05 - 종료일 : 2026.10.31

판매종료여부

판매중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디지털영업1부(P)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 스마트서비스부 ☎1566-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1차 연체여신에 대한 지연배상금률 변경(변경 적용일: 2018. 4. 27)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지연배상금률 적용방법은 대고객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0%로 한다. 다만, 대고객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고객금리에 연 2.0%p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는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6.0%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7.0%p, 3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연 8.0%p를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 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변경후)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 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2차 적용이율 결정방법,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및 수수료등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 추가 (변경적용일 : 2018.12.10)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적용이율 결정방법

(변경후)

(추가)

- 대출금리 예시(운전자금 3개월 변동금리, 법인신용등급 BB+등급, 무보증신용 2018.11.16 기준)
- ㅇ 기준금리 : 연 1.70%
- 가산금리 : 연 4.70%p~5.59%p
- ㅇ 적용금리 : 연 6.40%~7.29%
- (2)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변경전)

- 별도제한없음

(변경후)

- 휴일에 기업인터넷뱅킹 및 당행 ATM을 이용하여 원금 및 이자상환 가능. 단, 보증서 담보 여신은 보증금액 해지 통지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휴일 상환 불가
- (3) 수수료 등 부대비용

(추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 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 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및 한도약정 수수료(한도미사용 수수료 포함) 없음
- 전자채권 발행 및 보관수수료
- ㅇ 채권발행수수료(구매기업) : 건당 500원 □ 채권발행시점 납부
- ㅇ 채권보관(수취)수수료(판매기업) : 건당500원 □ 결제대금입금시점 납부
-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준법감시인 심의필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981-5호(2024.11.05)

(유효기간 : 2024.11.05 ~ 2026.10.31)